



제 1203호

2014년 11월 14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4- 1687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공공기록정보 등록 사전예고 2
공시송달(공고)
- 공고 제2014- 1696호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4
- 공고 제2014- 1698호 반환기간(5년)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공고 5
- 공고 제2014- 1700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자료실운영관리규정 전부개 7
정규정(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14- 172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입법예고
- 남동구의회사무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공고 제2014- 19호 입법예고
- 남동구의회사무국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40
공고 제2014- 20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41
공고 제2014- 21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폐쇄 공고 52
공고 제2014- 63호

고 시

- 고시 제2014- 137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서창1지구 어린이집) 53
사업 실시계획고시
- 고시 제2014- 139호 도로명주소 고시 54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4-16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채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채납에 따른 공공기록정보 등록 사전예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 11. 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공고기간 : 2014년 11월 7일 ~ 2014년 11월 28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태료 채납에 따른 공공기록정보 등록 사전예고		
2. 당사자	성 명	별지참조	주민등록번호	별지참조
	주 소	별지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부동산의 표시		별지참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채납에 따른 공공기록정보 등록 사전예고		
6. 법적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4)		

과태료체납에 따른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 목록

연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동산의 표시	비고
1	윤일에너지(주)	281111-*****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948번길	논현동 676-6	
2	김은경	740321-*****	인천시 서구 염곡로 172	구월동 1236-15	
3	황세미	6302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213번길	논현동 619-6	
4	이영호	641207-*****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373번길	간석동 37-292	
5	김종옥	611125-*****	인천시 남동구 구월남로289번길	구월동 1262-5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696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4. 11. 10.
- 제공받은 자 : 아진전산(주)
- 제공목적 : 자동차세 11월 수시분 및 독촉장(2014년 9월분) 인쇄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세 납세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세대상물건, 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지방세 고지서 출력 완료시까지
- 공고기간 : 2014. 11. 11. ~ 2014. 11. 26. (15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4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4 -1698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11. 12 ~ 2014. 11. 27 (15일간)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남동구청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담당 (☎032-453-2268)

반환기간(5년)경과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현황

연번	보관금종류	보관일	적요	납부자	금액
1	보관금-국고반환금	2009-01-29	08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국시비보조금 이자발생액	주민복지과	3,130
2	보관금-건강보험	2009-03-09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공제	양명*외28명	71,390
3	보관금-건강보험	2009-04-06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급여 공제	건설교통국 도시정비과	8,470
4	보관금-건강보험	2009-04-23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공제	도시정비과	15,880
5	보관금-건강보험	2009-05-06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급여 공제	도시정비과	27,540
6	보관금-건강보험	2009-06-26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공제	도시정비과	178,900
7	보관금-고용보험	2009-05-04	4월분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 공제	이승*	12,680
8	보관금-고용보험	2009-06-30	6월 교통유발부담금 인부임 공제	손보*	1,220
9	보관금-건강보험	2009-05-06	휴직자(강현*) 정산보험료	강현*	150,180
10	보관금-건강보험	2009-06-02	4월분 개별주택특성조사인부임 공제	하현*외4명	23,790
11	보관금-건강보험	2009-06-02	4월분 개별주택특성조사 인부임 공제	하현*외4명	6,930
12	보관금-건강보험	2009-06-30	6월 비과세감면조사 인부임 공제	세무1과	24,210
13	보관금-국민연금	2009-06-30	6월 비과세감면조사 인부임 공제	세무1과	40,950
14	보관금-채권압류금	2009-01-22	채권압류금(채무자 기승종합건설) 별단예금예치 이자발생액	경영재정과	715,320
15	보관금-건강보험	2009-04-21	만수3동 추가 공제	남동구청	5,440
16	보관금-건강보험	2009-05-04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이애*	47,830
17	보관금-건강보험	2009-05-20	5월분 직원등의 급여 공제	남동구청	2,887,360
18	보관금-건강보험	2009-06-03	5월분 대체인력 건강보험 공제	김아*외 12명	64,13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1700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자료실운영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자료실운영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11.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개정이유**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한 문장 정비, 행정자료실 이용자 범위확대, 변화된 행정환경 반영 및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가. 제명 정비**

(현 행)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자료실운영관리규정

(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자료실 운영 규정

나. 이용자 범위 확대

(현 행) 열람,대출 : 시산하 공무원, 인천광역시 거주자

(개정안)

- 열람 : 신분증 지참한 누구나

- 대출 : 시산하 공무원, 인천광역시민,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12. 2(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441, FAX 453-569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자료실운영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별첨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자료실운영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자료실운영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자료실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 ①자료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두며 민원봉사과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운영한다.

1. 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및 폐기
2. 자료의 구입
3. 소장자료의 활용
4. 독서 상담 및 자문
5. 기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②자료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실시한다.

③자료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직원을 둔다.

제3조(비치자료) 자료실에는 행정의 새로운 지식과 자질향상에 필요한 자료 및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비치한다.

1. 일반도서 및 정기 간행물
2. 각종 통계자료
3. 행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계획서, 보고서, 연보, 편람, 연구서 등 자료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기타 행정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자료

제4조(자료수집) ①각 부서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자료 중 행정업무수행상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2부

이상 자료실에 비치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중 행정업무수행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비치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구입) ①각 부서의 장은 업무에 활용할 도서류 및 기타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시로 그 목록을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민원봉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입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구입여부를 결정한 후 일괄 구입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제6조(자료분류·관리) ①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의하여 분류한다.

②분류가 완료된 자료는 자료실의 자료임을 표시(별표1, 별표2)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목록공개) 민원봉사과장은 매월 수집한 자료의 목록을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점검) 민원봉사과장은 자료실 소장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자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열람) ①자료는 자료 발행기관으로부터 열람제한 요구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 경우와 중요한 자료이거나 훼손우려가 예상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신분증을 지참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②열람자가 퇴실할 때에는 자료를 관리직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직원은 자료의 훼손 또는 절취여부를 확인한 후 회수하여야 한다.

③자료실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대출) ①대출은 자료실 회원가입으로 대출카드를 교부받은 자에 한하며, 회원가입(별지 제2호 서식)시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산하 공무원 및 인천광역시민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단, 만14세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 : 재직(재학) 증명서와 신분증

②자료의 대출은 도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③자료의 대출부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출부수 : 1인 5권 이내
 2. 대출기간 : 1인 14일 이내(단, 1회에 한하여 14일간 연장할 수 있다.)
- ④대출한 자료는 필요에 따라 대출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⑤중요한 자료이거나 분실의 우려가 예상될 때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폐기) 민원봉사과장은 소장자료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료폐기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고 연1회이상 폐기한다.

1. 행정자료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자료가 심하게 파손되어 형태가 불량하거나 내용을 볼 수 없는 경우
3. 이용률이 저조한 도서
4. 재구입이 불가능한 분실자료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제12조(자료반납독촉) ①대출자료의 반납기일을 어긴 자는 반납 지연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②대출인이 반납을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수시로 반납을 독촉한다.

제13조(변상) ①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 따른 변상은 동일 자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자료를 구입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자료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변상하였을 경우 민원봉사과장은 해당 자료를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다른 자료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자료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변상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자료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실에서는 타인의 열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여야 한다.
2. 각종 자료를 소중히 이용하여야 하며, 더럽히거나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타 자료실내에서는 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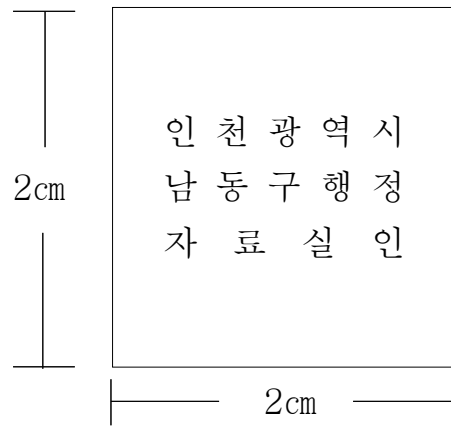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자료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봉사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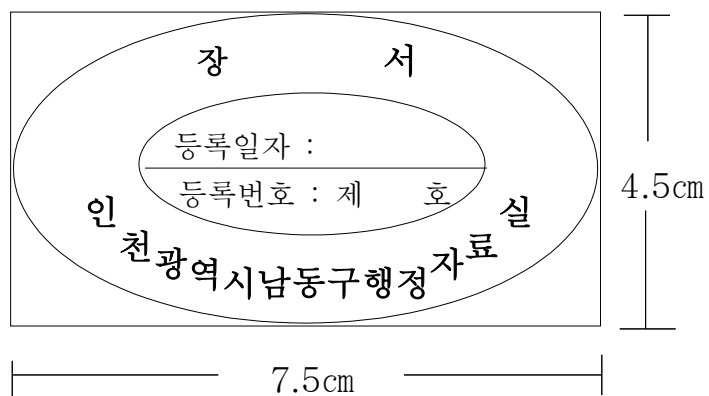
[별표1]

기 관 인



[별표2]

장 서 인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자료등록원부

등록번호	표제저작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가격사항	청구기호	자료실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도서회원 가입 신청서

도서관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행정자료실		
도서관 부호*	D28264		
성 명*		법정 대리인 성명**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일 경우, 가입
생년월일*	년	월	일
자택 주소*	우편번호 (-)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법정 대리인 휴대폰 번호**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일 경우, 가입
자택 또는 직장 전화번호			
근무처			

※ 안내 사항

1.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일 경우, 법정 대리인의 성명 · 휴대폰 번호는 필수항목입니다.
2. 필수항목(*, **)은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3. 이용자 ID는 각각의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자가 회원승인 과정 중에 생성합니다.
4. 이용자 비밀번호는 초기 비밀번호가 부여되며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년 일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아 이 디 :

비밀번호 :

1. 영문, 숫자, 특수기호 3가지 조합으로 8자리 이상
2. 영문, 숫자, 특수기호 중 2가지 이상 조합으로 10자리 이상으로
3. 아이디가 포함되지 않는 비밀번호

(별지 제3호 서식)

자 료 폐 기 대 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자 료 명	권 차	저 자	출판사	출판년월일	가 격	폐기사유	폐기년월일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자 료 변 상 통 지 서

변 상 자		분 실 자 료				변상액
소속(주소)	성 명	자료명	발행년 도	저 자	정 가	

상기 분실자료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20 년 월 일까지
변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별지 제5호 서식)

자 료 분 실 대 장

구입 일자	등록 번호	도 서 명	저자명	출판사명	가 격	분실 일자	분실자(변상자)		변상 일자	변상 구분	비고
							소속(주소)	성명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4-172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11. 1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 사업 및 각급 기관과 기업 등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내용

- 일자리창출 사업의 범위(안 제5조)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관련 근거 마련
- 일자리센터운영(안 제6조)
 -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행정·재정 지원(안 제7조)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행정적 지원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980, FAX 453-577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 사업 및 각급 기관과 기업 등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일자리창출 사업의 범위(안 제5조)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관련 근거 마련
- 일자리센터운영(안 제6조)
 -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행정·재정 지원(안 제7조)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행정적 지원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9조의2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 직업안정법 제4조의2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 · 육성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장년실업자,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관내 기업,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5.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센터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구인업체 발굴
3. 취업지원을 위한 채용박람회 또는 기업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행정·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구민의 고용 안정·촉진 등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제8조(실적보고 등)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9조(검사 · 감독) 구청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할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별도계정)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사업 지원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1. 실업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10.5.31>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구인·구직 정보수집)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장 백 승 인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고 제2014-1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418호, 2014.6.30.일부개정) 개정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관련 규정 적용
-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앙부처 기관 명칭 변경 (안 제12조제2항)
 -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개정 (안 제23조제2항)
 -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 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 : 현행 90일→120일
 - 출산 전후 휴가일수 및 특수한 경우 휴가사용일수 규정
-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불임치료 시술 휴가 및 모성보호기간 신설 (안 제23조제8항 ~ 제10항)
-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1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1일 (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2, 5030 / 팩스 032-453-501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01
----------	------

발의연월일 : 2014. 10. 28.

발 의 자 : 신 동 섭

찬 성 자 : 문종관외 6명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418호, 2014.6.30.일부개정) 개정
따른 모성보호시간 관련 규정 적용
-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중앙부처 기관 명칭 변경 (안 제12조제2항)
 -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개정 (안 제23조제2항)
 -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 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 : 현행 90일→120일
 - 출산 전후 휴가일수 및 특수한 경우 휴가사용일수 규정
-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불임치료 시술 휴가 및 모성보호기간 신설
(안 제23조제8항 ~ 제10항)
-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1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장기재직 휴가실시 현황(2014.10.21.현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⑪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1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공무원증 규칙」 (안전행정부령)----- -.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

현행	개정안
③ ~ ⑦ (생략)	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 3호를 제외하고 같다) · 사산의 경협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 ⑦ (생략) 〈신설〉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 이라한다) 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 ⑦ (생략) 〈신설〉	

현	행	개	정	안
				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⑪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4-20호

제 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 2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10 : 00

▣ 장 소 : 남동구의회 본회의장 (3층)

2014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의회 공고 제 2014-2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11. 11.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의정 비심의위원회-1(2014.10.27.)]와 관련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5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의 지급액을 1,932,500원에서 1,965,000원으로 조정(안 제3조의2 별표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 이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 동 희 의 원 발 의)

의안 번호	1606
----------	------

발의년월일 : 2014년 11월 11일

발 의 자 : 임동희

찬 성 자 : 최재현,민창기,임순애,임춘원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의정비심의위원회-1(2014.10.27.)]와 관련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5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의 지급액을 1,932,500원에서 1,965,000원으로 조정(안 제3조의2 별표2)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 33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33조, 제 34조』,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 공문, 인천시 군.구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현황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 제2항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지급액(1인기준)	1,965,000원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0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4.9.25.] [대통령령 제25621호, 2014.9.24.,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0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8.10.8.>
-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0.8., 2014.6.3.>
-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2014.6.3.>
-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⑨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10.8.>
- ⑩ 그 밖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 공문]

" 창조경제의 시작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區)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 남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구 분	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 비
결정금액	연 : 36,780천원 (월 3,065천원)	연 : 13,200천원 (월 1,100천원)	연 : 23,580천원 (월 1,965천원)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 제1항제2호 별표5 및 별표6에 의한 지급범위 내

※ 2016년 ~ 2018년 월정수당 지급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을 범위內

붙임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주무관

최훈

법무평가담당

노종희

위원장

박세민

협조자

시행 의정비심의위원회 - 1 (2014.10.27) 접수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 <http://www.namdong.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대국민 공개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남동구가 「정부3.0」을 선도하겠습니다.

/허훈/기획예산실/2014/10/27 16:31:51

인천광역시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2014년 10월 6일

구 분		결정금액	비 고
결정금액 (여비제외)		36,780천 원	
지 급 장 결 정 항 목	월정수당	연 : 23,580천원 (월 : 1,965천원)	○ 공무원보수인상을 범위내 결정
	의 활 등 비	연 : 13,200천원 (월 : 1,100천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별표 4에 따른 금액
	여 비	- 아래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금액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금액

<국내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 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區)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국외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6)>

(단위 : 미불화)

구 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구	의 장 부 의 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인천시 군.구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현황

(단위 : 원)

군.구	의정활동비 (월/1인기준)	월정수당(월/1인기준)			비 고
		2014년 현재	2015년 결정액	2016~2018년	
인천시	1,500,000	3,459,000	3,459,000 (동결)	동결	
중 구	1,100,000	1,867,000	1,899,000 (1.7% 인상)	- 2016년 동결 - 2017년 2016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범위 내 - 2018년 동결	
동 구	1,100,000	1,625,000	1,683,000 (3.5% 인상)	- 2016~2018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을 적용	
남 구	1,100,000	1,700,000	1,917,000 (12.7% 인상)	- 2016~2018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을 반영	
연수구	1,100,000	1,826,660	1,858,000 (1.7% 인상)	- 2016~2018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을 적용	
남동구	1,100,000	1,932,500	1,965,000 (1.7% 인상)	- 2016~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을 범위 내	
부평구	1,100,000	1,895,000	1,928,000 (1.7% 인상)	- 2016년 동결 - 2017년 2016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 - 2018년 동결	
계양구	1,100,000	1,749,160	1,779,000 (1.7% 인상)	- 2016년 동결 -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을 범위내 - 2018년 동결	
서 구	1,100,000	1,917,000	1,950,000 (1.7% 인상)	- 2016년 동결 -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을 적용 - 2018년 동결	
강화군	1,100,000	1,607,500	1,752,000 (9% 인상)	- 2016~2018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을 적용	
옹진군	1,100,000	1,435,000	1,459,000 (1.7% 인상)	- 2016~2018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을 적용	

실·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공고 제 2014-63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공고)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1. 1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 공고기간 : 2014. 11. 13 ~ 2014. 11. 27(15일간)

업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업주명	소 재 지	위반사항	행정처분일
유통 전문 판매업	26	(주)태화식품	박갑문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888-3, 4층	시설물멸실	2014.11.12.

- 당 사 자
-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일 : 2014. 11. 12
- 처분사유 : 시설물 멸실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 청 문 일 : 2014. 10. 21(수)
- 공시송달 청문일 : 2014. 11. 11(화)
- 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3)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4-137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서창1지구 어린이집)사업 실시계획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 서창1지구 어린이집】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보육정책과(☎453-58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11. 1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55-12, 555-13번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서창1지구 어린이집)
 - 명칭 : 서창1지구 어린이집 설치공사
- 사업의 규모 : 토지면적(1,111.2㎡), 건축면적(281.48㎡), 연면적(498.55㎡)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동구청장(보육정책과)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5. 8. 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지번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55-12	대	509.5	509.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55-13	대	601.7	601.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13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22번길 20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17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5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1.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 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43-5외 1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22번길	20	20091116	인주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5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11.1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인주대로522번길 20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0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 범 로 406번길	30	20091116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11.1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 406번길30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0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6-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158번길	7-6	20140725	서창방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11.1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방산로158번길7-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6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2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74	20091116	만수로의 서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11.1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서로74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4를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209	20091116	남동대로의 동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11.1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동로209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09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8-1	2014.11.1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8-2	2014.11.1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65번길	20-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03-2	2014.11.1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8번길	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6-6	2014.11.1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8번길	4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6-12	2014.11.1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